

예산총칙

2024년도 본예산

제 1 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2,127,147,352	63,814,421
일반회계	1,788,453,647	53,653,609
특별회계	338,693,705	10,160,811
공기업특별회계	258,197,321	7,745,92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25,275,529	3,758,266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32,921,792	3,987,654
기타특별회계	80,496,384	2,414,892
의료급여기금조성특별회계	7,021,083	210,632
수질개선특별회계	9,931,789	297,954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	10,702	321
지하수특별회계	648,499	19,455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46,428,000	1,392,840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15,807,940	474,238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648,371	19,451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5,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95,7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